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02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김주영 · 김태선 · 박균택
박 정 · 박해철 · 이기현
소병훈 · 박상혁 · 정태호
진성준 · 윤종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56조의 제목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대재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중대재해가”를 “중대재해등이”로 한다.

1. 중대재해

2.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외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중대재해”를 “중대재해등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생략)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

-----.

1. 중대재해

2.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 외에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공단 또는 해당 재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재해 원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 중대재해등이 -----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④ ----- 중대재해등의 -----
-----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
-----.

⑤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중대재해등이 -----

-----.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 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설>

4. ~ 13. (생략)

<신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2조(비밀 유지)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4. ~ 13.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0조(벌칙) -----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u>중대재해</u> 발생 현장 을 훼손하거나 <u>고용노동부장 관</u>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 8.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제4항----- ----- ----- <u>중대재해등의</u> ----- ----- <u>고용노동부장 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u>----- ----- 3. ~ 8. (현행과 같음)
---	---